

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< 금빛노인복지센터 >

시행 : 2023.01.01

제 1조 (계약대상)

계약대상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(보호자)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.

제 2조 (계약기간)

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대상자의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고, 등급 갱신 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를 작성한다. 단, 대상자(또는 보호자)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 3조 (계약목적)

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하여 대상자가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 하도록 지원하며 삶의 질 향상(정서적지지 및 지원강화)과 가족의 어르신 보호기능 보강과 보호자의 휴식 및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,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.

제 4조 (계약내용)

계약당사자, 계약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내용, 비용, 비급여 대상, 대상별 항목 비용 및 본인부담금액 등으로 한다.

제 5조 (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)

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및 「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」에 따른다.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. (다만,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)

- 1) 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%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, 85%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. (국가지정 저소득층 가정은 시군구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, 경감대상 해당자는 각각 구분에 따라 6%, 9%, 기초생활수급자는 0% 부담한다.)
- 2)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, 수급자(보호자)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.
- 3) 월 이용 한도액 및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다.

〈 등급별 월 한도액 〉

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월 한도액(원)	1,885,000	1,690,000	1,417,200	1,306,200	1,121,100

〈 방문목욕 〉

분류	30분	60분	90분	120분	150분	180분	210분
방문요양	16,190	23,480	31,650	40,280	46,970	52,880	58,930
본인부담금 (6%)	971	1,408	1,899	2,416	2,818	3,172	3,535
본인부담금 (9%)	1,457	2,113	2,848	3,625	4,227	4,759	5,303
본인부담금 (15%)	2,429	3,522	4,748	6,042	7,046	7,932	8,840

〈 방문목욕 〉

분류	차량이용(차량내목욕)	차량이용(가정내목욕)	차량미이용
방문목욕	82,160	74,070	46,250
본인부담금(6%)	4,929	4,444	2,775
본인부담금(9%)	7,394	6,666	4,162
본인부담금(15%)	12,324	11,110	6,937

제 6조 (기타비용부담)

- 1)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대상자(또는 보호자)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2)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(또는 보호자)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3)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(또는 보호자)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7조 (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)

- 1)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.
 1.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
 2.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
- 2)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친다.
 1. 비용 변경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한다.
 2. 해당 사항에 대해 “장기요양급여제공(이용)계약서”를 별도 작성 한다.

제 8조 (계약자, 당사자의 의무)

1. 급여제공자의 의무
 - 1) 수급자의 안전한 가정 내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
 - 2)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 - 3) 규정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
2. 수급자의 의무
 - 1) 월 이용료 납부
 - 2) 장기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
 - 3)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
 - 4)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
3. 수급자의 권리

- 1)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.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.
- 2)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.
- 3) 수급자는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,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.
- 4)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.
- 5)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.

제 9조 (신원인수인(보호자) 의 권리)

1.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2.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
3. 이용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4.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

제 10조 (신원인수인(보호자) 의 의무)

1.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2.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3.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
제 11조 (계약의 해제)

- 1)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의 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구두 및 전화로 통보 하도록 하며, 다만,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수급자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 허위로 신청했을 때
 - 타 기관과 이중 등록 했을 때
 -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 -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 -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
 -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 -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. 단,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해제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-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
2) 본인부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 시에는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며,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계약을 해제하고, 기관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를 실시할 수 있다.